

4. 법인세법시행령증개정령

대통령령 제15,797호 1998. 5. 16

주요 골자

- 가. 손해보험회사가 장래 발생할 비상위험에 총당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지정한도를 보험료의 20퍼센트에서 보험료의 2퍼센트로 하향조정함(령 제16조제2항).
- 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총당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총 거래액의 0.02퍼센트와 증권매매액의 60퍼센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증권매매액의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함(령 제17조의4제1항).
- 다.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손실의 보전에 총당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신용보증잔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령 제21조의2제2항).
- 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집권유비의 손비인정년도를 계약액 등의 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로(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령 제44조제3호)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세년도의 선진화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업·증권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충당금년도의 손비인정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경과보험료”로 하고, 동항 단서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2를”로, “100분의 20으로”를 “100분의 2로”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순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경

과보험료”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상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7조의9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100분의 2를”을 “100분의 1을”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과세표준신고서에 총리령이”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

부령이”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6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중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1,000분의 1”을 각각 “1만분의 5”로 하며, 동항 제3호중 “1,000분의 20”을 “1천분의 10”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1,000분의 1”을 “1만분의 5”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할인어음의 매출권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잔액의 1만분의 5

제59조제1항중 “경과연수”를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로 한다.

제84조제3항중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를 “제23조의2·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6조,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4호다목·동조제4항, 제14조제5항제1호·2호·동조제6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1조제3호,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제23조의4제2항·제5항, 제24조의2제2호,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호·제4호, 제34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제6호·동조제2항, 제37조의3제4항 본문·제9항, 제37조의4제2호, 제38조제2항제6호, 제38조의2제1항 본문,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제1호타목·제2호마목,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제1호 단서, 제43조의2제2항제1호·제2호·동조제3항·제8항·제9항제13호·제11항·제16항 후단, 제44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44조의4제1항,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동조제2항·제4항 본문·제2호·제3호·동조제5항, 제50조제4항·제6항제1호·제7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제56조제5항제

2호, 제57조 후단, 제66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8조의2제2항·제9항, 제80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제3항제4호·제5호·동조제7항, 제89조, 제91조의2제4항, 제91조의3제8항 본문·제10항, 제100조의2제3항·제8항, 제100조의4제1항3호, 제100조의5제4항 단서·제6항, 제111조, 제118조제1항 본문, 제122조제1항제8호·제124조의3제7항, 제124조의4제5항제1호나목, 제124조의5제1항제2호·제3호·동조제10항·제13항, 제124조의10제5항, 제124조의13, 제125조제1항 본문, 제130조제2항, 제130조의2제4항 본문·제4호, 제134조제1항 및 제135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5호,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2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6조·제1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5·제59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손비인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